

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	14일	
신청인	①선임인 []해당 - 신고번호() []비해당				
	사업장명		대표자	②업종	
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근로자 수		
	소재지 (전자우편주소:)				
	전화번호		팩스번호		
③구분	[] 최초 신청(승인번호:) [] 연장승인 신청(승인번호:)				
④제품명					
⑤ 이의 신청의 취지 및 사유 등	신청물질		검토결과		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
	명칭	(CAS No.) 함유량	대체명칭	대체함유량	
	1.				
	2.				
	3.				
※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가 개별 물질별로 다른 경우 각각 기재					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3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

붙임 서류	1.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의 설명에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	수수료 없음		
작성방법				
※ 신청인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 1. ①란은 신청인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. 2. ②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. 3. ③란은 최초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인지 또는 연장승인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인지 여부를 승인번호와 함께 기재합니다. 4. ④란은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 5. ⑤란은 불승인 된 화학물질의 정보와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를 함께 작성합니다.				
처리절차				
이의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 접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→ 비공개 승인 재심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→ 결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→ 통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